

전주지방법원 2023. 9. 14 선고 2022가단2815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가람

변 론 종 결 2023. 8. 31.

판 결 선 고 2023. 9. 14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20. 6. 5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0. 6. 11. 접수 제6335호로 마친 각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D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자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1087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. 6. 2. “채무자(D)는 채권자(원고)에게 금 9,026,229원과 그중 금 8,220,810원에 대하여는 2020. 6. 2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%, 금 452,620원에 대하여는 2020. 6. 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.”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. 위 지급명령은 2020. 6. 4. D에게 송달되었고, 같은 달 19. 확정되었다.

나. D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20. 6. 5. 피고(D과 남매지간)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 및 전남 완도군 E 임야 1884㎡ 등 3필지를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20. 6. 11.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한편,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임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10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D이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처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D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한편 민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상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.

나.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

1) 제척기간

피고는,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 일시로부터 2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, 오히려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일시가 이 사건 소제기일(2022. 9. 22.)부터 불과 한 달여 전인 2022. 8. 19.인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따름이다.

2) 명의신탁

피고는,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것인데 그 매입대금을 피고가 모두 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여서 부득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바, 피고가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D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다툰다. 그러나 피고가 위 낙찰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사실 내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,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) 자력 여부

피고는,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위 E 임야도 소유하고 있었는데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임야를 함께 처분한 행위로서 일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4) 선의항변

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D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, 을 제1, 2호증, 을 제3-1,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D과 남매지간인데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D과 피고 사이에 오랜 기간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, 피고가 D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.

다. 소결론

결국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 나아가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승곤